

##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

제 정	:	2007. 11. 1
개 정	:	2009. 4. 1
개 정	:	2013. 1. 1
개 정	:	2014. 2. 1
개 정	:	2017. 4. 1
개 정	:	2018. 6. 1
개 정	:	2019. 4. 8
개 정	:	2019. 7. 8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금강대학교 대학원의 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은 교육기본법, 고등교육법 및 금강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대학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, 학사운영,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설치)** 금강대학교에 일반대학원을 둔다.

**제3조(학위과정)**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(이하 ‘석사과정’이라 한다)과 박사학위과정(이하 ‘박사과정’이라 한다)을 둔다.

**제4조(학과·전공 및 입학정원)** ①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위과정별 학과·전공 및 입학정원은 <별표1>과 같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대학원에 입학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)정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1.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
2.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
3.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

### 제2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

**제5조(수업연한)** ① 수업연한이라 함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하며 석사과정 2년, 박사과정 3년 이상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연한을 각 과정별로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.

**제6조(재학연한)** ① 재학연한이라 함은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하며, 과정수료를 위한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.

1. 석사과정 : 6학기이내
  2. 박사과정 : 10학기이내
- ② 재입학자는 전적기간을 통산한다.

③ 석사학위 논문은 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, 박사학위 논문은 과정 수료 후 10년 이내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
**제7조(수업)** ① 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야간에 실시할 수 있다.

②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.

### 제3장 입학, 편입학 및 재입학

**제8조(입학시기)**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**제9조(입학자격)**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.

1. 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2.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.

**제10조(입학지원 및 전형)** ①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원의 입학전형은 서류심사, 필기시험, 구술, 면접 등으로 시행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.

③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1조(외국인 전형)** ① 외국인으로서 대학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 총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전형으로 정원외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입학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2조(편입학)** ① 총장은 타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생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 허가 할 수 있다.

② 편입학 지원자격은 유사계열의 학과 또는 전공자에 한하여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이며, 본교 대학원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.

③ 편입학시 타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은 해당전공에서 대체과목을 선정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.

**제13조(재입학)** ① 총장은 당해학년도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재입학은 1년이 경과된 후 1회에 한하여 입학이 가능하다. 단, 재학연한 경과, 성적 미달 또는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.

③ 재입학자는 제적 전 이수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.

④ 재입학자에 대한 장학금은 당해년도 기준을 적용한다.

### 제4장 등록, 수강신청, 휴학, 복학, 자퇴 및 제적

**제14조(등록)** ①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학

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재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 등록하여야 한다.

③ 등록학기의 횟수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한다.

1. 석사과정 : 6학기

2. 박사과정 : 10학기

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학기 내에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고 재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각 호의 학점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. 단, 대학원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 대상기준은 유지된다.

1.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 학기 수업료의 2분의1 해당액

2.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

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는 당해학기 등록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의한 분할납부 대상자는 정해진 분납기간에 일정금액 이상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분납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처리할 수 있다.

**제15조(수업료의 반환)** 재학중인 자가 본인의 진로변경, 질병, 사망,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(당사자 부담금)중 해당금액을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. 다만, 입대휴학자의 경우 수업료를 반환하지 않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하여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에게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사 유 발 생 일	반 환 금 액
학기 개시일 전	수업료 전액
학기 개시일 30일 경과전	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
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 경과전	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
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 경과전	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

**제16조(수업료 감면)** 각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수업연한을 만료하고 이수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업료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. 다만, 잔여재학연한내에 학위과정별 교과목을 수강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수강신청)** 수강신청은 지정된 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18조(휴학)** ① 휴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휴학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학기중에 질병, 병역,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
②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한다

1. 석사과정 : 3개 학기

2. 박사과정 : 4개 학기

3. 위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과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과연기간은 2항의 휴가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, 출산, 만8세 이하(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)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학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*제19조(복학)** ① 휴학자는 휴학의 사유 및 기간이 종료되면 복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되 그 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.

② 휴학기간이라도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복학을 허락한다.

③ 미등록 휴학자의 경우 제1항에 의거 복학 할 시에는 복학당해학기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자퇴)** 퇴학을 희망하는 자는 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21조(제적)**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할 수 있다.

1.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하지 못한 자

2. 휴학기간이 종료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

3.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자

4.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

## 제5장 교육과정과 수료

**제22조(교육과정 및 교과목)** 대학원에서 이수할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학과내 전공별 교육과정표에 의한다.

**제23조(학기당 수강신청 학점)** ① 학생은 수료전까지 매학기 수강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매학기 최대 수강신청 학점은 9학점으로 한다.

**제24조(선수과목 이수)** ① 대학원장은 비 동일계열 입학생에 대하여 수료학점 이외에 추가로 선수과목에 대한 이수를 명할 수 있다.

② 선수과목 이수는 학적부상 그 사실이 등재되나, 대학원 졸업학점으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.

**제25조(교내·외 대학원과의 학점교류)** 대학원 재학 중 국내·외 정규 대학원에서 본인의 전공과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, 수업 년 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.

**제26조(학위과정 수료)** ①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수업년한 이상을 등록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학생 중 전 과목 평점평균이 3.0 이상인 학생에 대해 각각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.

② 대학원의 수료에 필요한 최소 이수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, 박사과정 36학점

이상으로 한다.

③ 학위과정의 수료 시기는 매학기 종료일로 한다.

## 제6장 학업성적

제27조(학업성적) ①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.

실 점	등 급	평 점
97~100	A+	4.3
94~96	A0	4.0
91~93	A-	3.7
87~90	B+	3.3
84~86	B0	3.0
81~83	B-	2.7
77~80	C+	2.3
74~76	C0	2.0
0~73	F	0

② 총장이 따로 지정하는 선수교과목은 합격(P) 또는 불합격(N)으로 분류하여 표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취득학점 및 평점평균 산출에는 제외된다.

제28조(수업출석) 학생은 수강신청한 전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하며 각 과목별 결석 일수가 전 수업시간의 1/4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.

제29조(학점취득) 학점은 성적평점 2.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한다.

제30조(재이수) 학업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교과목은 취득한 성적등급에 관계없이 재이수할 수 있으며, 재이수 성적등급 취득과 동시에 그 이전의 성적등급은 무효 처리한다.

## 제7장 자격시험

제31조(구분) 각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으로 구분한다.

제32조(외국어시험 및 전공종합시험) 학위청구 논문을 신청 제출하기 전까지 석·박사과정 학생은 외국어시험 및 전공종합시험을 합격하여야 하며, 시험과목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으로 정한다.

## 제8장 학위논문 제출 심사

제33조(학위논문제출자격)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 또는 당해학기 취득예정자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1.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
2.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3. 기타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

제34조(논문제출 승인서)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논문제출 승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35조(학위청구논문 제출)**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학생은 지정된 기간에 학위청구논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논문제출시 논문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. ② 논문제출 연한은 석사과정은 수료후 5년 이내, 박사과정은 수료후 10년 이내에 제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.

**제36조(학위논문심사위원회)** ① 학위청구논문심사는 논문심사위원회가 행한다.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의 전공분야나 인접분야의 교수 혹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. ②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는 3인, 박사학위는 5인으로 한다.

③ 학위청구논문 심사의 합격판정은 석사학위는 심사위원 2인 이상, 박사학위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**제37조(논문심사결과 보고)** 주심은 논문심사결과를 소정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.

### 제9장 학위수여 등

**제38조 (학위수여)**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을 충족하고 소요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학위청구논문이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는 총장이 <별표 2>의 학위를 수여한다.

② 제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의 학위 또는 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**제39조 (학위기)** ① 석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(1)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.

② 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(2)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.

**제40조(학위수여 등 수여의 취소)** 총장은 석사, 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또는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.

### 제10장 명예박사학위

**제41조(수여자격)** 우리나라의 문화창달과 학술발전에 크게 공헌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**제42조(수여절차)** 명예박사학위의 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사장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.

**제43조(명예박사학위 종별)** 명예박사학위의 종별은 본 학칙 제38조에 의한다.

**제44조(학위기)** 명예박사학위 수여는 별지 서식(3)에 의한 학위기로서 행한다.

### 제11장 공개강좌 및 연구생

**제45조(공개강좌)** ① 대학원에 직무, 교양 또는 연구를 위한 학식 또는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널리 지도함을 목적으로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.

② 공개강좌의 과목 또는 제목, 기간, 수강인원, 장소 및 기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

로 정한다.

**제46조(연구생)**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 중 연구생으로 등록을 원하는 학생이나, 대학원 수료 후 논문준비를 하는 자로서 소정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연구생으로 입학할 수 있다.

② 연구생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구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생으로서 연구 실적이 양호한 자에게는 소정의 연구실적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.

④ 연구생은 총 석사 5년 박사 10년의 재학년한을 가지며, 기숙사, 도서관 등 학교의 시설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.

## 제12장 장학금, 상별

**제47조(장학금, 연구보조금)** 대학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48조(상별)** ①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현저하여 타의 모범이 될 만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.

②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총장이 이를 징계처분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13장 학생활동

**제49조(학생회)** ① 대학원 학생의 자치활동기구로 대학원에 학생회 또는 원우회를 둘 수 있다.

② 학생회 및 원우회의 운영 및 회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14장 대학원위원회

**제50조(설치)**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를 둔다.

**제51조(구성 및 소집)** ①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.

②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.

**제52조(임기)** 위원(당연직 위원 제외)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53조(기능)** ①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·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  2. 학위과정·학과(부)·전공의 설치·폐지와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
  3.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사항
  4. 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  5.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- ② 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로 성립하고 심의위원의 과반수 이상

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### 제15장 학칙 개정

제54조(학칙개정) 학칙 개정 절차는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칙 개정안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고 대학평의원회와 교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·의결한 후 총장이 학칙개정안을 확정 공포한다.

### 제16장 기타

제55조(준용) 이 학칙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.

제56조(세부사항) 이 학칙 시행 상 필요한 내규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학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학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학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학칙은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학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① 2017년 4월 1일자 개정 이전의 사회복지불교학과 재학생, 수료생 중 불교학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소속은 불교학과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한다.  
② 2017년 4월 1일자 개정 이전의 사회복지불교학과 재학생, 수료생 중 사회복지학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소속은 기존의 사회복지불교학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개정 학칙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            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①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전의 입학생들의 수업연한은 석사 2년, 박사 2년으로 정한다.  
② 2019년 4월 8일자 개정 학칙 이후의 입학생들의 수업연한은 석사 2년, 박사 3년으로 정한다.  
③ 이 개정 학칙 제51조(구성 및 소집)의 경우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학칙에 의거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### 부            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학칙은 201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.(제46조 ②)

## &lt;별표 1&gt;

대학원 학과 및 전공, 입학정원

학 과	세부전공	입학정원	
		석사과정	박사과정
불교학과	불교교학/ 불교사 / 응용불교학/ 불교복지학	10	5

## &lt;별표 2&gt;

대학원 학과 및 전공별 수여학위

학 과	세부전공	학위명	
		석사	박사
불교학과	불교교학/ 불교사 / 응용불교학/ 불교복지학	문학석사	철학박사

## &lt;별지서식 1&gt;

석 제 호	학 위 기		
	성 명 :		
	년	월	일
위 사람은 대학원 불교학과 ( )학전공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제출한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어 문학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. 논문제목 :			
년 월 일			
금 강 대 학 교 대 학 원 장 (학위) 인			
위의 인정에 의하여 문학석사의 학위를 수여함			
년 월 일			
금 강 대 학 교 총 장 (학위) 인			
학위번호 : 금강대 (석)			

## &lt;별지서식 2&gt;

박 제 호	학 위 기		
	성 명 :		
	년	월	일
위 사람은 대학원 불교학과 ( )학전공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아래 제출한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어 철학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함. 논문제목 :			
년 월 일			
금 강 대 학 교 대 학 원 장 (학위) 인			
위의 인정에 의하여 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			
년 월 일			
금 강 대 학 교 총 장 (학위) 인			
학위번호 : 금강대 (박)			

<별지서식 3>

명박 제 호

# 학위기

### 성명 :

년 월 일 생

일월년

# 금 강 대 학 교 대 학 원 장 (학위) 인

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철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

년 월 일

# 금 강 대 학 교 총 장 (학위) 입

학위번호 : 금강대 (명박)